

##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의안

### 1. 안건명 : 재단법인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

#### 2. 제안이유

- 2002 오송 국제 바이오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재단을 존치하여 그간에 형성된 BIO의 국민인식 제고 효과를 지속하여 발전시키고
- 오송 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한 바이오 공학 및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#### 3. 주요골자

- 조례제명 및 재단의 명칭 변경
  - “재단법인 오송 국제 바이오 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조례”를 → “재단법인 오송 바이오 진흥 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하고,
  - “재단법인 오송 국제 바이오 엑스포 조직 위원회”를 → “재단법인 오송 바이오 진흥 재단”으로 함
- 재단의 목적을 “오송 국제 바이오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등”을 “오송 국제 바이오 엑스포의 이념 및 성과를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오송 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한 바이오 공학 및 산업 진흥”으로 함
- 재단의 사업을 오송 국제 바이오 엑스포 후속사업 발굴추진, 오송 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한 바이오 공학 및 산업 진흥, 오송 생명과학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업 등으로 함

4. 의안 전문 : 따로 붙임

5. 관계법령 텔레 : 따로 붙임

6. 제안자 의견

-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개최로 다져진 “바이오충북”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단의 목적·명칭·사업을 변경 재단을 존치하여 엑스포 후속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, 오송생명과학단지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 사료됨.

# 재단법인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

재단법인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 재단법인오송바이오진흥재단설립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이념과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고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한 바이오공학 및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법인격 및 명칭)**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, 명칭은 “재단법인오송 바이오진흥재단”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**제3조(사무소)**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북도 관내에 둔다.

**제4조(정관)**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
  2. 명칭
  3. 사무소의 소재지
  4. 사업에 관한 사항
  5. 설립당시의 자산종류 및 평가액
  6.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
  7. 임원의 정수·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
  8.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
  9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10. 재단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
  11.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
  12. 재단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
- ②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5조(사업)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후속사업 발굴추진
2.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한 바이오공학 및 산업진흥
3. 오송생명과학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업

제6조(재단의 재산)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출연금으로 한다.

1. 충청북도의 출연금
2. 기관·단체 및 후원인 등의 출연금

제7조(운영비 등 지원)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공유재산의 대부 등)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.

제9조(공무원 파견 및 겸임) 도지사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제10조(다른 법령의 준용)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관한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민법 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

-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### □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(설립허가 기준)

-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,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·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(이하 각 "기본재산"이라 한다)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한다.
- ②~③ (생략)

### □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(잔여재산의 귀속)

- ① 혜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의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중여 또는 무상대부 한다.

### □ 지방재정법 제14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·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.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  2.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  3.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
  4.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 (생략)

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4조(보조대상)

-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  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  2.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  3. 도가 관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(겸임)

-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·특수전문분야의 일반직공무원·대학교수등 교육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·연구기관 기타 기관·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.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·연구기관 기타 기관·단체의 임직원은 특수전문분야의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.

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(파견근무)

-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·다른 지방자치단체·국가기관·공공단체·정부투자기관·국내외의 교육기관·연구기관 기타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,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외의 기관·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②~④ (생략)